

**송도국제도시 B3블록 더샵 송도아크베이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가 9억초과 주택형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 합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설치 바로가기

**■ 더샵 송도아크베이 입주자모집공고 19Page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중 3)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기준 →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변경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를 포함하여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 기준 →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50% 우선공급 하고, 수도권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변경 →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를 포함하여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송도국제도시 B3블록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이버견본주택(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으로 운영합니다.
  - 본 사이버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기간 및 정당계약 기간 등 일부 지정일에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방문예약 후 방문 가능하며, 당사가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견본주택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견본주택 입장 시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온도가 37.5도가 넘을 경우
    - \* 견본주택 입장 시 손 소독, 체온측정, 전자출입명부(QR코드) 및 방문자기록 등 방역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거나,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청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 코로나-19[COVID-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송도국제도시 B3블록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으로 분양상담전화 (☎1855-1331)를 실시하고 있으나, 문이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화상담은 고객 여러분들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상담하기 어렵고, 제한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사오니, 반드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와 한국부동산원(청약Home)을 통하여 청약자격, 제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관련하여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견본주택의 유닛 관람은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기간 및 계약기간 내에만 관람이 가능하오니 이점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당첨자 사전서류 접수 및 정당계약 일정**

**1. 당첨자 사전서류접수 일정**

당첨자 사전서류접수 일정						
구분	2022.01.17.(월)	2022.01.18.(화)	2022.01.19.(수)	2022.01.20.(목)	2022.01.21.(금)	2022.01.22.(토)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10:00 ~ 10:30	8	8	8	8	8	8
10:30 ~ 11:00	8	8	8	8	8	8
11:00 ~ 11:30	8	8	8	8	8	8
11:30 ~ 12:00	8	8	8	8	8	8
12:00 ~ 13:00						
13:00 ~ 13:30	8	8	8	8	8	8
13:30 ~ 14:00	8	8	8	8	8	8
14:00 ~ 14:30	8	8	8	8	8	8
14:30 ~ 15:00	8	8	8	8	8	8
15:00 ~ 15:30	8	8	8	8	8	8
15:30 ~ 16:00	8	8	8	8	8	8
16:00 ~ 16:30	8	8	8	8	8	8
16:30 ~ 17:00	8	8	8	8	8	8
17:00 ~ 17:30	8	8	8	8	8	8

2. 당첨자 정당계약 일정

당첨자 정당계약 일정						
구분	2022.02.07.(월)	2022.02.08.(화)	2022.02.09.(수)	2022.02.10.(목)	2022.02.11.(금)	2022.02.12.(토)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10:00 ~ 10:30	8	8	8	8	8	8
10:30 ~ 11:00	8	8	8	8	8	8
11:00 ~ 11:30	8	8	8	8	8	8
11:30 ~ 12:00	8	8	8	8	8	8
12:00 ~ 13:00						
13:00 ~ 13:30	8	8	8	8	8	8
13:30 ~ 14:00	8	8	8	8	8	8
14:00 ~ 14:30	8	8	8	8	8	8
14:30 ~ 15:00	8	8	8	8	8	8
15:00 ~ 15:30	8	8	8	8	8	8
15:30 ~ 16:00	8	8	8	8	8	8
16:00 ~ 16:30	8	8	8	8	8	8
16:30 ~ 17:00	8	8	8	8	8	8
17:00 ~ 17:30	8	8	8	8	8	8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 및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 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167세대는 개발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17호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상 국제업무단지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외국인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금번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24.(금)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세대원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동일 청약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접수결과 미달인 경우 미달된 세대수는 기타 수도권(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저축 관련 사항

입주자저축 종류	기한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모집공고 당일 까지	규모별 / 지역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청약저축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청약부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규모별 / 지역별 기준에 따라 납입 85㎡ 초과 주택에 청약 시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규모별 / 지역별 기준에 따라 예치기준금액 납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청약예금으로 전환 이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 청약부금 → 청약예금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신청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변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
- 지역 간 전입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인천광역시 및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전입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 단, 경쟁 발생 시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 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 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 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② : 청약자 또는 세대원)		결과
부적격 예시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당첨 ②	①, ② 부적격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②	① 부적격, ②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참여 불가
	특별공급 당첨 ① + 특별공급 낙첨 ②	① 부적격 (※ ② 특별공급 신청 이력으로 ①당첨자의 부적격)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05.2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공급규칙 제35조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① 세대주가 아닌 자
- ② 과거 5년 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모든주택 해당)
-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청약 가능)
-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미만, 지역별 / 면적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하지 못한 자

구분	주택소유 구분	세대주 요건
1순위 청약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세대주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세대주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세대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주택자 이상	세대주, 세대원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1순위 청약 시 과거 당첨자발표일이 2019.12.14.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가점제 제한 대상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 ③ 입주가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 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 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http://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 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계약체결 합니다.



■ 해외 거주 인정 기준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필요 시 세대구성원)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인천광역시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거주 인정 기준**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적용사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가능합니다.
-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소유 판정기준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분양권 등 포함) 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4항 및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p><b>'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b></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p>
<p><b>'분양권 등' 매수자 (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b></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 주택소유로 봄</p>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등" 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해당침 제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침으로 인해 해당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해당침 제한이 적용되며,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1항 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1항 제3호)	10년간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 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5년	소유권이전등기일 (5년 초과 시 5년)

■ 전매금지 및 해당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일정 및 서류제출 등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기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담보 인정 비율 (LTV), 총부채 상환비율 (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2020.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부양자)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2.01.04.(화)	2022.01.05.(수)	2022.01.06.(목)	2022.01.14.(금)	2022.01.17.(월)~2022.01.22.(토) (6일간)	2022.02.07.(월)~2022.02.12.(토) (6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	더샵 송도아크베이 견본주택 방문 (10:00~17:00) ※방문예약자만 입장가능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2번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예약 시스템 운영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 ~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 ~ 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21153호(2021.12.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5번지 (B3블록)
-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4층 ~ 지상 최고49층 4개동, 총775세대 중 일반분양 608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6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2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4세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1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167세대는 개발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17호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상 국제업무단지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외국인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금번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대지면적 : 27,268.90㎡ 중 제척면적 452.44㎡, 사업부지면적 26,816.46㎡ (아파트 : 18,733.18㎡)
- ▣ 입주시기 : 2025년 3월 예정

▣ 공급대상 (민영주택) (단위: ㎡, 세대수)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 표기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1회차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합계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 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천)	경제 자유 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자				계
2021000883	084.2000A	84A	84.2000	29.5471	113.7471	61.8975	175.6446	19.5022	8	8	8	17	8	2	51	36	87	-
	084.8100B	84B	84.8100	31.0631	115.8731	62.3460	178.2191	19.6435	8	8	8	17	8	2	51	36	87	-
	098.0600	98	98.0600	36.2464	134.3064	72.0862	206.3926	22.7123	-	9	9	-	-	2	20	74	94	-
	112.3000	112	112.3000	39.5856	151.8856	82.5544	234.4400	26.0107	-	-	-	-	-	-	-	99	99	-
	121.1800A	121A	121.1800	42.2680	163.4480	89.0824	252.5304	28.0672	-	-	-	-	-	-	-	116	116	-
	121.0600B	121B	121.0600	43.9834	165.0434	88.9941	254.0375	28.0395	-	-	-	-	-	-	-	116	116	-
	155.3300	155	155.3300	55.6530	210.9830	114.1872	325.1702	35.9768	-	-	-	-	-	-	-	3	3	-
	168.7300	168	168.7300	58.8898	227.6198	124.0381	351.6579	39.0805	-	-	-	-	-	-	-	3	3	-
179.4200	179	179.4200	65.0345	244.4545	131.8964	376.3509	41.5566	-	-	-	-	-	-	-	3	3	-	
합 계									16	25	25	34	16	6	122	486	608	-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2000A	084.8100B	098.0600	112.3000	121.1800A	121.0600B	155.3300	168.7300	179.4200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84A	84B	98	112	121A	121B	155	168	179

- ※ 면적 환산방법(공급면적→평)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므로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기타공용면적은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소수점 이하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며,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sup>2</sup>,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라 인	층구분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입주 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10%) 2022.05.11	2회(10%) 2022.11.11	3회(10%) 2023.04.11	4회(10%) 2023.10.11	5회(10%) 2024.03.11		6회(10%) 2024.09.11		
084.2000A	84A	101동 1호	18~20층	9	401,319,000	363,681,000	-	765,0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22~25층	12	405,830,560	367,769,440	-	773,60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77,360,000	232,080,000	
			26~30층	15	410,342,120	371,857,880	-	782,20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234,660,000	
			31~35층	15	412,597,900	373,902,100	-	786,50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235,950,000	
			36~40층	15	414,853,680	375,946,320	-	790,80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237,240,000	
			41~45층	15	417,109,460	377,990,540	-	795,100,000	79,510,000	79,510,000	79,510,000	79,510,000	79,510,000	79,510,000	79,510,000	79,510,000	79,510,000	238,530,000	
084.8100B	84B	101동 2호	18~20층	6	419,680,000	380,320,000	-	80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240,000,000		
			22~25층	12	390,617,160	353,982,840	-	744,60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74,460,000	223,380,000	
			26~30층	15	395,233,640	358,166,360	-	753,40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75,340,000	226,020,000	
			31~35층	15	397,541,880	360,258,120	-	757,800,000	75,780,000	75,780,000	75,780,000	75,780,000	75,780,000	75,780,000	75,780,000	75,780,000	75,780,000	227,340,000	
			36~40층	15	399,797,660	362,302,340	-	762,100,000	76,210,000	76,210,000	76,210,000	76,210,000	76,210,000	76,210,000	76,210,000	76,210,000	76,210,000	228,630,000	
			41~45층	15	402,105,900	364,394,100	-	766,500,000	76,650,000	76,650,000	76,650,000	76,650,000	76,650,000	76,650,000	76,650,000	76,650,000	76,650,000	229,950,000	
098.0600	98	101동 3호	14~15층	3	424,878,720	385,019,345	38,501,935	848,400,000	84,840,000	84,840,000	84,840,000	84,840,000	84,840,000	84,840,000	84,840,000	84,840,000	254,520,000		
			16~20층	13	429,986,880	389,648,291	38,964,829	858,60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257,580,000	
			22~25층	12	435,044,960	394,231,855	39,423,185	868,70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86,870,000	260,610,000	
			26~30층	15	440,153,120	398,860,800	39,886,080	878,90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87,890,000	263,670,000	
			31~35층	15	442,707,200	401,175,273	40,117,527	884,0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265,200,000	
			36~40층	15	445,211,200	403,444,364	40,344,436	889,0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266,700,000	
112.3000	112	101동 4호	41~45층	15	447,765,280	405,758,836	40,575,884	894,10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268,230,000		
			46~48층	6	450,669,920	408,390,982	40,839,098	899,90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89,990,000	269,970,000	
			13~15층	6	596,853,440	540,860,509	54,086,051	1,191,800,000	119,180,000	119,180,000	119,180,000	119,180,000	119,180,000	119,180,000	119,180,000	119,180,000	119,180,000	357,540,000	
			16~20층	15	602,562,560	546,034,036	54,603,404	1,203,20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120,320,000	360,960,000
			22~25층	12	608,321,760	551,252,945	55,125,295	1,214,700,000	121,470,000	121,470,000	121,470,000	121,470,000	121,470,000	121,470,000	121,470,000	121,470,000	121,470,000	364,410,000	
			26~30층	15	614,080,960	556,471,855	55,647,185	1,226,200,000	122,620,000	122,620,000	122,620,000	122,620,000	122,620,000	122,620,000	122,620,000	122,620,000	122,620,000	367,860,000	
121.1800A	121A	101동 5호	31~35층	15	616,935,520	559,058,618	55,905,862	1,231,900,000	123,190,000	123,190,000	123,190,000	123,190,000	123,190,000	123,190,000	123,190,000	123,190,000	369,570,000		
			36~40층	15	619,840,160	561,690,764	56,169,076	1,237,700,000	123,770,000	123,770,000	123,770,000	123,770,000	123,770,000	123,770,000	123,770,000	123,770,000	371,310,000		
			41~45층	15	622,694,720	564,277,527	56,427,527	1,243,400,000	124,340,000	124,340,000	124,340,000	124,340,000	124,340,000	124,340,000	124,340,000	124,340,000	124,340,000	373,020,000	
			46~48층	6	626,000,000	567,272,727	56,727,273	1,250,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375,000,000	
			8~10층	8	664,461,440	602,125,964	60,212,596	1,326,800,000	132,680,000	132,680,000	132,680,000	132,680,000	132,680,000	132,680,000	132,680,000	132,680,000	132,680,000	398,040,000	
			11~15층	15	667,265,920	604,667,345	60,466,735	1,332,400,000	133,240,000	133,240,000	133,240,000	133,240,000	133,240,000	133,240,000	133,240,000	133,240,000	133,240,000	399,720,000	
121.0600B	121B	101동 6호	16~20층	15	673,475,840	610,294,691	61,029,469	1,344,800,000	134,480,000	134,480,000	134,480,000	134,480,000	134,480,000	134,480,000	134,480,000	134,480,000	403,440,000		
			22~25층	12	679,635,680	615,876,655	61,587,665	1,357,100,000	135,710,000	135,710,000	135,710,000	135,710,000	135,710,000	135,710,000	135,710,000	135,710,000	407,130,000		
			26~30층	15	685,845,600	621,504,000	62,150,400	1,369,500,000	136,950,000	136,950,000	136,950,000	136,950,000	136,950,000	136,950,000	136,950,000	136,950,000	410,850,000		
			31~35층	15	688,900,480	624,272,291	62,427,229	1,375,600,000	137,560,000	137,560,000	137,560,000	137,560,000	137,560,000	137,560,000	137,560,000	137,560,000	137,560,000	412,680,000	
			36~40층	15	692,005,440	627,085,964	62,708,596	1,381,800,000	138,180,000	138,180,000	138,180,000	138,180,000	138,180,000	138,180,000	138,180,000	138,180,000	138,180,000	414,540,000	
			41~45층	15	695,110,400	629,899,636	62,989,636	1,388,0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138,800,000	416,400,000	
155.3300	155	101동 1호	46~48층	6	698,616,000	633,076,364	63,307,636	1,395,00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139,500,000	418,500,000		
			8~10층	8	629,054,880	570,041,018	57,004,102	1,256,100,000	125,610,000	125,610,000	125,610,000	125,610,000	125,610,000	125,610,000	125,610,000	125,610,000	376,830,000		
			11~15층	15	631,859,360	572,582,400	57,258,240	1,261,700,000	126,170,000	126,170,000	126,170,000	126,170,000	126,170,000	126,170,000	126,170,000	126,170,000	378,510,000		
			16~20층	15	638,119,360	578,255,127	57,825,513	1,274,200,000	127,420,000	127,420,000	127,420,000	127,420,000	127,420,000	127,420,000	127,420,000	127,420,000	127,420,000	382,260,000	
			22~25층	12	644,379,360	583,927,855	58,392,785	1,286,700,000	128,670,000	128,670,000	128,670,000	128,670,000	128,670,000	128,670,000	128,670,000	128,670,000	128,670,000	386,010,000	
			26~30층	15	650,589,280	589,555,200	58,955,200	1,299,100,000	129,910,000	129,910,000	129,910,000	129,910,000	129,910,000	129,910,000	129,910,000	129,910,000	129,910,000	389,730,000	
168.7300	168	101동 3호	31~35층	15	653,744,320	592,414,255	59,241,425	1,305,400,000	130,540,000	130,540,000	130,540,000	130,540,000	130,540,000	130,540,000	130,540,000	130,540,000	391,620,000		
			36~40층	15	656,849,280	595,227,927	59,522,793	1,311,600,000	131,160,000	131,160,000	131,160,000	131,160,000	131,160,000	131,160,000	131,160,000	131,160,000	393,480,000		
			41~45층	15	659,954,240	598,041,600	59,804,160	1,317,800,000	131,780,000	131,780,000	131,780,000	131,780,000	131,780,000	131,780,000	131,780,000	131,780,000	395,340,000		
			46~48층	6	663,560,000	601,309,091	60,130,909	1,325,0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본 주택의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주택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천하여 추천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를 받은 금액 내에서 주택형, 동, 호,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록세 포함) 및 인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옥션]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 [유상옥션]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부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청약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공급계약 체결 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부담하여 납부한 인지세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동일 블록 내에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 하며, 이 경우 상호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세대는 별도 안내예정이며, 9억원 초과 세대는 중도금대출이 불가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금융기관의 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 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보된 10% 금액을 “을”의 사정으로 입주일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절차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은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98	112	121A	121B	155	168	179	계
<b>공급 세대수</b>	<b>87</b>	<b>87</b>	<b>94</b>	<b>99</b>	<b>116</b>	<b>116</b>	<b>3</b>	<b>3</b>	<b>3</b>	<b>608</b>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3	3	-	-	-	-	-	-	6
	장애인	2	2	-	-	-	-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1	-	-	-	-	-	-	2
	장기복무제대군인	1	1	-	-	-	-	-	-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1	1	-	-	-	-	-	-	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8	8	9	-	-	-	-	-	-	2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4	4	5	-	-	-	-	-	13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50%)	4	4	4	-	-	-	-	-	12
신혼부부 특별공급	17	17	-	-	-	-	-	-	-	3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8	8	-	-	-	-	-	-	-	16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2	2	2	-	-	-	-	-	-	6
<b>합 계</b>	<b>51</b>	<b>51</b>	<b>20</b>	<b>-</b>	<b>-</b>	<b>-</b>	<b>-</b>	<b>-</b>	<b>-</b>	<b>122</b>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세대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부양자 등)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건본주택에서 접수가능 (은행창구 접수 불가)</li> <li>인터넷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 및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고, 청약 접수일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함.</li> </ul>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중복신청 하여 1명이라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li> <li>[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li> <li>- 무주택세대주 요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li>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신청자</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세대가 없는 주택형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전체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 합니다.(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으로 전환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미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므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대상세대 : 총16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②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 입주자저축 불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 군인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지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10년 이상 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성장지원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당첨확정자, 예비대상자)는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대상세대 : 총25세대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②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당해지구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 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청약일에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며, 대상자(당첨 확정자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일에 인터넷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청약 미신청 시 계약불가)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으로 간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유의사항**

※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대상세대 : 총25세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태아나 입양자녀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됨.
-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 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에 따라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자녀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 되는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세대원 모두 무주택(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한 경우)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기타 수도권 (인천·서울·경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	100	-	-	-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기록대조일은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추가서류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사·도 거주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 변동사유 및 변동일,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 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 등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한부모 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 건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복무확인서	해당자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청약신청 및 당첨된 경우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신부임 입증서류 하단 표 참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의 경우 상기 모든 증명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으로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일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일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대상세대 : 총34세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7년 이내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로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청약자격요건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출생신고일 기준)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양자 및 친양자)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4명 이상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1)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2)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3)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를 포함하여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를 포함하여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 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030,161원 ~ 7,236,192원	7,094,206원 ~ 8,513,046원	7,094,206원 ~ 8,513,046원	7,393,648원 ~ 8,872,376원	7,778,024원 ~ 9,333,628원	8,162,400원 ~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030,161원 ~ 8,442,224원	7,094,206원 ~ 9,931,887원	7,094,206원 ~ 9,931,887원	7,393,648원 ~ 10,351,106원	7,778,024원 ~ 10,889,232원	8,162,400원 ~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236,193원 ~ 9,648,256원	8,513,047원 ~ 11,350,728원	8,513,047원 ~ 11,350,728원	8,872,377원 ~ 11,829,835원	9,333,629원 ~ 12,444,837원	9,794,880원 ~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442,225원 ~	9,931,888원 ~	9,931,888원 ~	10,351,107원 ~	10,889,233원 ~	11,427,360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	11,350,729원 ~	11,350,729원 ~	11,829,836원 ~	12,444,838원 ~	13,059,839원 ~

- 기준소득(5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2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3.3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원)\*(N-8), 100%기준} ※ N→ 9인 이상 가구원수

※ 자산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 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 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소득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① 금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사)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견본주택 비치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기록대조일은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상단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추첨제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은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출력이 불가하므로 본인 및 세대원의 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 내방하여 증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이하 국토교통부"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주택 공시가격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 토지 :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불가한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정부24 또는 인근 주민센터)과 상기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또는 해당자	• 견본주택에 비치		
복무확인서	해당자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청약신청 및 당첨된 경우		
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급 기준은 상기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참조하여 발급)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의 경우 상기 모든 증명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동/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으로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대상세대 : 총16세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지역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가구

\*1인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미혼인 자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자를 포함] 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 세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년도 납세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
  -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사업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우선공급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1인 가구	160%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자산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p>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주택</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 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 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 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가구원수 적용기준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단, 임신 중인 태아 및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소득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12.24.(금)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근무처별 소득명세상 “주(현)”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납부분에 한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li> <li>①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li> <li>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li> <li>③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li> </ul>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 2010, 2013, 2014, 2016, 2018, 2020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1.12.24.(금)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근로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자영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견본주택 비치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청약하러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기록대조일은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비연속적인 5개년도 소득세납부사실도 인정
추가서류 (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소득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추가서류 (해당자)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은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출력이 불가하므로 본인 및 세대원의 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 내방하여 증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이하 국토교통부”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주택 공시가격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 토지 :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불가한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정부24 또는 인근 주민센터)과 상기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증이 아닌 직계비속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의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청약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또는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복무확인서	해당자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청약신청 및 당첨된 경우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급 기준은 상기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명 참조하여 발급)	
대리인 접수 시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의 경우 상기 모든 증명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으로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대상세대 : 총6세대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자격요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 미적용됨.(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우선공급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이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양가족 수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b>총점</b>	<b>84</b>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제외)
-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제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제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기록대조일은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 등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기록대조일은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추가서류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결혼한 후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 제외
	출입국 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기록대조일은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급 기준은 상기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참조하여 발급)
복무확인서	해당자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청약신청 및 당첨된 경우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제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의 경우 상기 모든 증명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동/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적용 요건을 충족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으로 청약 신청 시 10년 이상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에 따른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

구분	연령	내용
직계존속	-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의 기간 내에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른 요양시설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거주 하였거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최근 1년 기간 중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당첨자),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li> <li>② ①번 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li> <li>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li> <li>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까지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li> </ol> </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발표 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li> <li>•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 (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함</li> </ul> </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에 인터넷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 (재당첨제한 적용) 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도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점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할 것</li> <li>세대주일 것</li> <li>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li>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li> </o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 (기타지역)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li> <li>※ 청약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li> </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li> <li>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신청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 <li>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2순위로만 청약 가능)</li> <li>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고,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이 분류됩니다. (가점제 / 추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 초과 주택은 50% 가점제, 50%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li> <li>①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li>②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ul> </li> <li>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 (1인 1건만 신청 가능) 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li> <li>청약자 본인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동일세대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고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합니다.</li> <li>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 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은 부적격 (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 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 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멸기간 내에 해당 공급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li> </ul> <p>■ 입주자 저축 관련 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256 1429 1560 1608"> <thead> <tr> <th>입주자저축 종류</th> <th>기한</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주택청약종합저축</td> <td>입주자모집공고 당일 까지</td> <td>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td> </tr> <tr> <td>청약저축</td> <td>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td> <td>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td> </tr> <tr> <td>청약부금</td> <td>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td> <td>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 85㎡ 초과 주택에 청약 시 청약예금으로 전환</td> </tr> <tr> <td>청약예금</td> <td>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td> <td>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예치기준금액 납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li> <li>※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청약예금으로 전환 이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li> <li>※ 청약부금 → 청약예금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신청 가능.(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신청 가능)</li> <li>※ 청약예금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 세대주 변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li> <li>• 지역 간 전입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인천광역시 및 기타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전입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 지역으로 청약 신청 접수 하하여 함)</li> <li>•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li> <li>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li> <li>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li> <li>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 시 기입한 정보의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건본주택에 통보하여야 합니다.</li> </ol> </li> </ul>	입주자저축 종류	기한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모집공고 당일 까지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청약저축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청약부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 85㎡ 초과 주택에 청약 시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예치기준금액 납입
입주자저축 종류	기한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모집공고 당일 까지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청약저축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청약부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 85㎡ 초과 주택에 청약 시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예치기준금액 납입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점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이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전용면적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이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1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대주가 아닌 자.</li> <li>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li> <li>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li> <li>④ 2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li> </ol> </li> </ul>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 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자</li> </ul>	
		2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해당점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해당점 제한 기간에 있는 분도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li> </ul>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2]

청약가능 전용면적	거주 지역별 예치금액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기타 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 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 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 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의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②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 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양가족 수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b>총점</b>	<b>84</b>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구분	내 용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속한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li> <li>• 전용면적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 (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동일순위 신청자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2019.12.24 이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거주) 신청자에게 50%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자를 포함하여 기타 수도권(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등·호수를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합니다. (등·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때까지) 예비입주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예비입주자 지위기간 동안 당사 분양홈페이지 명단 게시)</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 ~ 16:00)</li> <li>• 인터넷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 제한 적용) 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 합니다.</li> <li>• 일반공급 당첨자로 선정 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4항 및 제53조**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시오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5)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등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공유지분 소유 시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3. 제2조제4호 다목 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에 관한 적용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 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2018.12.10 이전 공급 분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거나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사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호 또는 1주택 (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 “소형·저가 주택 등”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단, 2007.09.0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특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지역 또는 거주기간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상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일~모집공고일까지 발급(2021.12.24.)]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하였거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을 경우부양가족 제외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제외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결혼한 후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 제외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일~모집공고일까지 발급(2021.12.24.)]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주소변동사유 및 변동일,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 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급 기준은 상기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참조하여 발급)	
복합확인서	해당자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근원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신청한 경우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해외체류에 따른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

구분	연령	내용
직계존속	만30세 미만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의 기간 내에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거주 하였거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최근 1년 기간 중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b>2022.01.04(화)</b> (‘청약Home’ 인터넷 : 09:00 ~ 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 ~ 14:00)	• 인터넷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li> <li>•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일반공급	1순위	<b>2022.01.05(수) 09:00 ~ 17:3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b>2022.01.06(목) 09:00 ~ 17:30</b>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견본주택방문접수 (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 ~ 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이 기재하는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행정정보 자동조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 (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 (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분	구비 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li> <li>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li>주민등록표등본 1통</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 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 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위임 받은자의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서 당일 영업시간 내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비고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01.14.(금)</li> <li>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2.01.17.(월)~2022.01.22.(토) [6일간] (10:00~17:00)</li> <li>장소 : 당사 견본주택 T:1855-13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송도동 37-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02.07.(월)~2022.02.12.(토) (6일간)</li> <li>장소 : 좌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당사홈페이지 (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에서 사전 방문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가능 일정은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li> <li>※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만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이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 조회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순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1.14.(금) ~ 2022.01.23.(일) [10일간] 조회가능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gt; 청약조회 =&gt;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 앱 접속 =&gt; 당첨조회=&gt;당첨조회(10일간)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li> <li>※ 당첨조회 (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당첨사실 조회하기 (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p>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p> <p>제공일시 : 2022.01.1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p>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 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공급 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01.14(금)</li> <li>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개별 연락예정</li> <li>※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li> </ul>

- ※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된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부적격 당첨된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까지 당사 분양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임.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 당시 입력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와 실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상이한 경우, 당사 대표번호(1855-1331)로 연락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예비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에 한해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함.
- ※ 서류제출 기간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 추첨을 위해 방문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은 공란 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b>※본인 발급용</b>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추가(아파트 계약 위임용)
	○		• 대리인 신분증,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646837 - 01 - 01253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401호 당첨자가 흥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401흥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람.
- 중도금, 잔금 납부 :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계약 이후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에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 별 납부일 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음.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이버건본주택(VR)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반드시 건본주택을 확인 후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 및 당첨자로 관리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는 당첨자로 간주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의 정당계약일정은 주택소유현황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이 적절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부적격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나, 부적격당첨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여 적격자 판명 시 계약을 체결함.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날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입주 예정자 중 부적격 사항 확인, 이중 당첨자, 서류의 결격 및 위조, 불법,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 해지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됨.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처리 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됨.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지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국가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위탁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용자 알선 또한 불가함.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함.
- 분양가 9억원 이하 세대에 한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대출금 신청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출알선 의무는 없으나,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시 9억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위탁사가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임. 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중도금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
- 본 아파트는 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 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이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후 미상환시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위탁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계약해제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자후불제 적용 시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위탁사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전에 대납했던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입주 시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동일적용)
- 이자후불제 적용 시 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 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 시 한도, 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 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	잔금
84A	33,600,000	3,360,000	30,240,000		
84B	33,600,000	3,360,000	30,240,000		
98	39,500,000	3,950,000	35,550,000		
112	43,800,000	4,380,000	39,420,000		
121A	53,300,000	5,330,000	47,970,000		
121B	53,300,000	5,330,000	47,970,000		
155	60,900,000	6,090,000	54,810,000		
168	70,000,000	7,000,000	63,000,000		
179	80,000,000	8,000,000	72,000,000		

### ▣ 발코니확장공사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646837 - 01 - 01253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사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한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포함) 선택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사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개폐 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 등으로 인하여 실사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새시 및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 등으로 인하여 실사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세대는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사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4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별도계약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삼성전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84A	3	거실 + 주방 + 안방	5,500,000	550,000	4,950,000	
	5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8,500,000	850,000	7,650,000	
84B	3	거실 + 주방 + 안방	5,500,000	550,000	4,950,000	
	5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8,500,000	850,000	7,650,000	
98	3	거실 + 주방 + 안방	5,600,000	560,000	5,040,000	
	5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8,700,000	870,000	7,830,000	
112	3	거실 + 주방 + 안방	6,700,000	670,000	6,030,000	
	5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9,800,000	980,000	8,820,000	
121A, 121B	3	거실 + 주방 + 안방	7,000,000	700,000	6,300,000	
	6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1,500,000	1,150,000	10,350,000	
155	4	거실(2) + 주방 + 안방	9,800,000	980,000	8,820,000	
	7	거실(2)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2,800,000	1,280,000	11,520,000	
168	4	거실(2) + 주방 + 안방	10,100,000	1,010,000	9,090,000	
	7	거실(2)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4,500,000	1,450,000	13,050,000	
179	4	거실(2) + 주방 + 안방	10,200,000	1,020,000	9,180,000	
	7	거실(2)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4,600,000	1,460,000	13,14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공사가 업체를 선정 후 단일제조사로 진행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바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가능 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 각 1개소 제공 (에어컨 장비는 제외)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설치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 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외부에서 당사 AIQ home APP을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옵션 선택 시에만 제어가능)
- 세대내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타입	내용	제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84A, 84B, 98	BI김치냉장고 (삼성)	삼성 김치냉장고 : RQ22K5L(R)01EC	1,850,000	185,000	1,665,000	-
	112, 121A, 121B, 155, 168, 179	BI김치냉장고 (삼성)		2,000,000	200,000	1,800,000	
	84A, 84B, 98	BI김치냉장고 (LG)	LG 김치냉장고 : K221PR14BL1/R1	1,850,000	185,000	1,665,000	-
	112, 121A, 121B, 155, 168, 179	BI김치냉장고 (LG)		2,000,000	200,000	1,800,000	
전기오븐	전타입	삼성	삼성오븐:HSB-N361B,	400,000	40,000	360,000	※가전(김치냉장고, 빌트인냉장고) 선택 시 선택가능
		LG	LG오븐: MZ385EBT	430,000	43,000	387,000	
빌트인냉장고	84A, 84B, 98	삼성 비스포크(냉장,변온,김치)	냉장: RR39T7695AP 변온: RZ24T5660AP	6,000,000	600,000	5,400,000	-
	112, 121A, 121B, 155, 168, 179	삼성 비스포크(냉장,변온,김치)	김치: RQ32R7645AP	6,150,000	615,000	5,535,000	
식기세척기	84A, 84B, 98	LG 식기세척기	LG : DUB22SB	1,300,000	130,000	1,170,000	-
	84A, 84B, 98, 112, 121A, 121B, 155, 168, 179	삼성 식기세척기	삼성: DW60T7075FS	1,200,000	120,000	1,080,000	
음식물분쇄처리기	전타입	-	-	750,000	75,000	675,000	-
청정환기유니트	84A, 84B, 98	청정환기시스템 일반형	200CMH(공기살균)	1,300,000	130,000	1,170,000	-
	112, 121A, 121B, 155, 168, 179		250CMH(공기살균)	1,600,000	160,000	1,440,000	
	84A, 84B, 98		300CMH(공기살균)	1,600,000	160,000	1,440,000	
	112	청정환기시스템 고급형	200CMH	3,300,000	330,000	2,970,000	
	121A, 121B		250CMH	3,600,000	360,000	3,240,000	
	155, 168		250CMH	4,100,000	410,000	3,690,000	
	179		300CMH	4,300,000	430,000	3,870,000	
			300CMH	4,400,000	440,000	3,960,000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청정환기시스템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전열교환기 대신 청정환기유니트 제품이 설치 됨.
- 청정환기시스템 일반형은 1개의 이동형(포터블)타입 실내공기질측정 장치로 세대 전체가 통합 제어되며, 고급형은 각 실마다 실내공기질측정장치 및 전동디퓨저가 설치되어 각실 제어가 가능함.
- 청정환기시스템의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일반형 선택 시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당 1개와 청정환기시스템용 3.5인치 color TFT LCD 룸콘이 설치되며, 고급형(각실제어) 선택 시 실내공기질측정(AIG)장치는 각 방 마다 룸콘 일체형이 설치됨.
- 청정환기시스템의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본공사 시 현장상황에 따라 청정환기유니트는 위치가 이동될 수 있으며, 다용도실에 청정환기유니트 설치 시 노출시공되며, 이에 따라 다용도실 천정높이가 달라질 수 있음.
- 청정환기시스템의 필터교체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연 1회 이상을 권장해 드립니다.
- 청정환기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을 할 수 없음.
- 음식물분쇄처리기 선택 시 온수분배기와외의 간섭으로 싱크볼의 배수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장비 설치에 필요한 공간만큼 수납 공간은 줄어듦.
- 음식물분쇄처리기 선택 시 제품 설치위치와 싱크대 배수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음식물분쇄처리기 배출구의 배출고무는 성능유지 차원에서 연1회 교환하여야 하며, 제품별 소모성 교환 품목은 선택 전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및 주방 상판 타공 사이즈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음.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3) 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위치	적용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주방 쇼룸형 장식장	주방	84A	일반 수납장 → 유리도어 장식장(고급형)	650,000	65,000	585,000	-
		84B	일반 수납장 → 유리도어 장식장(고급형)	1,350,000	135,000	1,215,000	-
		98	일반 수납장 → 유리도어 장식장(고급형)	570,000	57,000	513,000	-
슬라이딩 불박이장	안방	84A	사틴 유리 슬라이딩 불박이장	2,750,000	275,000	2,475,000	-
		84B	사틴 유리 슬라이딩 불박이장	2,600,000	260,000	2,340,000	-
		98	사틴 유리 슬라이딩 불박이장	2,600,000	260,000	2,340,000	-
		112	사틴 유리 슬라이딩 불박이장	2,600,000	260,000	2,340,000	-
		121A	사틴 유리 슬라이딩 불박이장	2,750,000	275,000	2,475,000	-
		121B	사틴 유리 슬라이딩 불박이장	2,750,000	275,000	2,475,000	-
자녀방 불박이장	침실1	84A	-	850,000	85,000	765,000	-
		84B	-	850,000	85,000	765,000	-
		98	-	950,000	95,000	855,000	-
		112	-	950,000	95,000	855,000	-
		121A	-	950,000	95,000	855,000	-
	침실2	121B	-	950,000	95,000	855,000	-
		155	-	850,000	85,000	765,000	-
		168	-	950,000	95,000	855,000	-
		179	-	950,000	95,000	855,000	-
		알파룸	121B	-	1,100,000	110,000	990,000

- 타입별로 가구설치 위치가 상이하어 가구도어 열림 방향, 측면장 위치 등이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음.
- 자녀방 불박이장 설치 위치/길이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각 타입별 분양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84A, 84B, 98, 112, 155, 168, 179타입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과 슬라이딩도어(본라이프룸) 유상옵션을 동시 선택할 수 없음 (둘 중 한 가지 옵션만 선택 가능)

**(4) 마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위치	적용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바닥 포세린타일	거실/복도/주방	84A	유럽산 포세린 타일	3,500,000	350,000	3,150,000	-
		84B	유럽산 포세린 타일	3,800,000	380,000	3,420,000	-
		98	유럽산 포세린 타일	4,100,000	410,000	3,690,000	-
		112	유럽산 포세린 타일	5,100,000	510,000	4,590,000	-
		121A	유럽산 포세린 타일	5,100,000	510,000	4,590,000	-
		121B	유럽산 포세린 타일 (본라이프룸 미선택 시)	5,100,000	510,000	4,590,000	-
	거실/복도/주방/알파룸	121B	유럽산 포세린 타일 (본라이프룸 선택시 )	6,400,000	640,000	5,760,000	-
	거실/복도/주방	155	유럽산 포세린 타일	7,600,000	760,000	6,840,000	-
		168	유럽산 포세린 타일	8,500,000	850,000	7,650,000	-
179		유럽산 포세린 타일	8,400,000	840,000	7,560,000	-	
세라믹타일 아트월	거실/복도	112	이태리산 세라믹타일	6,100,000	610,000	5,490,000	-
		121A	이태리산 세라믹타일	5,900,000	590,000	5,310,000	-
		121B	이태리산 세라믹타일	5,400,000	540,000	4,860,000	-
		155	이태리산 세라믹타일	6,500,000	650,000	5,850,000	-
		168	이태리산 세라믹타일	6,600,000	660,000	5,940,000	-
		179	이태리산 세라믹타일	7,700,000	770,000	6,930,000	-
현관중문	현관	전타입	3연동 슬라이딩 중문	2,200,000	220,000	1,980,000	-
슬라이딩도어 (본라이프룸)	침실1	84A, 84B	침실1 슬라이딩 도어	2,100,000	210,000	1,890,000	-
		98	침실1 슬라이딩 도어	2,100,000	210,000	1,890,000	-
		112	침실1 슬라이딩 도어	2,100,000	210,000	1,890,000	-
	알파룸	121A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2,100,000	210,000	1,890,000	-
		121B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알파룸슬라이딩도어+우물천장(간접조명 미설치))	3,900,000	390,000	3,510,000	-
	침실2	168	침실2 슬라이딩 도어	2,100,000	210,000	1,890,000	-
		155, 179	침실2 슬라이딩 도어	2,100,000	210,000	1,890,000	-

- 현관중문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
- 세라믹타일 아트월과 슬라이딩도어(본라이프룸) 중복 선택시 세라믹타일 아트월의 시공 범위가 줄어들 수 있음.

(5)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위치	적용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	거실	84A, 84B	거실, 안방, 침실 감성조명 거실 우물천장 등박스 + 거실 간접조명	2,300,000	230,000	2,070,000	-
	거실, 주방	98	거실, 안방, 침실 감성조명 거실/주방 우물천장 등박스 + 거실/주방 간접조명	3,300,000	330,000	2,970,000	-
	거실, 주방, 복도	112	거실, 안방, 침실 감성조명 거실/주방 우물천장 등박스 + 거실/주방 간접조명 복도/현관 등박스 + 복도/현관 간접조명	4,600,000	460,000	4,140,000	-
	거실, 주방, 복도	121A, 121B	거실, 안방, 침실 감성조명 거실/주방 우물천장 등박스 + 거실/주방 간접조명 복도/현관 등박스 + 복도/현관 간접조명	4,800,000	480,000	4,320,000	-

- 112, 121A, 121B타입 에서 루미나 옵션 미선택 시 아트월에서 복도 부분과 현관 천장은 수평으로 설치되어, 간접 등박스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기능은 거실등, 안방등, 침실등이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주방, 복도 등박스에 간접 LED 조명(밝기만 제어)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관 간접 LED조명은 현관센서로 점·소등 제어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거실, 주방, 복도는 월패드, 침실은 통합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APP 및 음성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단, 음성인식 제어 기능은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천장형 시스템어컨, 가전/가구/마감/루미나옵션 추가선택품목(유상) 대금 납부는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지정된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분	납부 조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 시	입주지정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 계좌	계약금(10%)	잔금(90%)	우리은행	1005 - 704 - 124507	송도국제도시개발(유)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되고, 추후 유상옵션 추가 선택 시 입주 전 부동산 실거래 정정신고는 계약자가 직접해야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홈스타일 초이스 (발코니확장 시 선택옵션)

적용타입	품목	선택	내용
84A	안방 드레스룸	1안 (기본형)	파우더형
		2안	올인원드레스룸

- 홈스타일 초이스 선택사항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이 가능함.
- 홈스타일 초이스를 미선택한 경우 1안으로 설치됨.
- 홈스타일 초이스 선택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별도로 작성한 홈스타일 초이스 신청서에 따르며, 추후 이를 변경하거나 선택사항 오류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
- 안방 드레스룸 선택형(기본형 드레스룸 또는 올인원 드레스룸)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수납공간, 제공 품목 차이, 등기구 디자인 및 위치, 콘센트 등 배선기구 수량 및 위치가 변동되므로 반드시 분양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서 시공된 제품은 품질, 품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VII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 입주예정일 : 2025년 03월 예정

(※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함.)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당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차로부분) : 지하2층 2.7m / 지하1층 3m 이하 / 지하3~4층 2.3M (택배차량은 지하 2층 까지만 진입 가능) 단, 공동주택은 지하2층 ~ 4층사용 (지하1층 판매시설, 오피스텔 사용 / 지하2층은 일부 오피스텔사용)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수영장,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각 1개소 등),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등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VIII 단지역건 및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름.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li> <li>•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li> <li>•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람.</li> <li>•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 (거주 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li> <li>•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li> <li>•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길 바람.</li> <li>•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임.</li> <li>•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li> <li>•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li> <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li> <li>•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함.</li> <li>-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함.</li> <li>-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함.</li> </ul> </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은 2020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18.09.01)'에 따라 적용됨.</li> <li>•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li> <li>•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li> <li>• 일반분양시설인 복리시설의 대지지분은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로 공급됨.</li> <li>•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하여 시공관리 예정임.</li> </ul>
사업지 및 도로 단지역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를 관통하여 동·서측 및 단지 남측으로 공개공지 1, 2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중앙에 조성된 공공보행통로의 사용으로 인한 인접세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송도국제업무단지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식재조성공간, 보행자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대지경계선 안쪽 전면공지는 준공 시 공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연수구청)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지상권 등을 설정할 수 있음.</li> <li>•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 단지는 바닷가에 인접하여 해무 발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세대 외부에 결로수 발생이나 전기기계기구 등의 수명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 등이 완료될 경우 단지 인근 개발예정부지의 위치, 용도,</li> </ul>



구분	내용
	<p>규모, 형태에 따라 현재 조망과 달라질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국전력공사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주거 2.8m x 2.8m 1개소, 비주거 2.8m x 2.8m 2개소)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및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li> <li>• 야간조명 효과 및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패널, 외관에 설치되는 유리외장가막 및 금속판넬 등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각 동의 세대는 가로등, 야간조명,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권역도로 및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취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임.</li> <li>• 당해지구 내 학생배치 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 수용 여건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람.</li> <li>•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 변경 시까지 인천 연송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학여건 확보를 위하여 통학로 해당도로에 속도저감 대책 및 보행신호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임.</li> </ul>
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동/103동 사이에 판매시설용 냉각탑이 설치되어 소음 및 시선간섭이 발생 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201동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시설임.</li> <li>•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li> <li>•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북카페) 및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 시,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입주자 동의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li> <li>•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동 하부 지하 / 지상층 및 주변에 헬륨 또는 제연헬륨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무인택배 설비는 각 동별 지하2층에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되며,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고 무인택배함의 위치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li> <li>•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층에 설치됨.</li> <li>• 아파트 옥탑 및 지붕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TV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건축물 (단지 내 및 지붕층)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음.</li> <li>•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부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의 설치 및 부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지상식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li> <li>• 초고속 정보통신은 특등급, 홈네트워크 설비는 AA등급을 기준으로 설계,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입주 시 등급이 변경 될 수 있음.</li> <li>• 태양광 발전설비는 각 동별 옥상에 약 35Kw설치예정이고, 옥상 면적에 따라 설치용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공용부 전력계통 연계로 구성됨.</li> <li>•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승강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음.</li> <li>• 「소방내진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될 예정이며, 사용과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시설 헬름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각종 옥상에는 소화용 저수조 펌프실, 엘리베이터홀 급배기용 환 등이 설치되므로 인접한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층에 입주민을 위한 창고가 설치될 예정이며,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ul>
<p>동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시설 계획상 101동 1층에 경로당, 2층에 스마트라운지(비즈니스룸), 3층에 게스트하우스, 102동 1층 펫카페, 어린이집 2층에 작은도서관(북카페)과 코인세탁실, 3층에 독서실, 103동 1층에 관리사무실, 2층에 실내골프연습장, 3층에 사우나 및 수영장, 4층에 피트니스센터, GX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사용에 있어 소음 및 진동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민공동시설은 동별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층에서 동간 실내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li> <li>• 101동, 102동, 103동 21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단지 내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고,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li> <li>•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간섭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일부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사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함.</li> <li>•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됨.</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추후 인허가 사항에 따라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해야 함.</li> <li>•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다르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단지 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조망간섭,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견본주택의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문주계획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외부창호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성능개선, 안전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외장마감에 사용된 금속판넬 유리마감으로 인해 각 세대별 위치에 따라 빛 반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우천 시 세대 외부 장식물 마감부위에 우수가 떨어짐으로써 일부 인접한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동 옥탑에는 조형물,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의 조망 및 시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li>• 주동 옥상의 형태는 평지붕이며, 주동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는 태양광 패널이 시공될 예정임.</li> <li>• 본 사업은 신설된 건축법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의 전실이 추가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li> <li>• 주동 옥상 구조물의 형태는 실시 설계 시 구조검토에 따라 기둥의 형태, 사이즈, 개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동 저층부 및 입면 마감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103동 사이 판매시설용 냉각탑이 위치 및 오피스텔동 하부에 오피스텔용 냉각탑이 위치하며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 할 수 있음.</li> <li>•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 장소는 지하2층에 동별로 위치하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장소는 지상1층 필로티 하부에 위치함.</li> <li>• 재활용 분리수거대, 창고, 자전거보관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동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됨.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APT의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204g 임(VII-0.204g)</li> <li>•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 (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의 조경 시설을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어린이놀이터-2는 101동, 102동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어린이놀이터-3은 103동에서만 출입이 가능함.</li> <li>• 101동, 102동 4층에는 어린이놀이터-2 출입을 위한 필로티가 위치하여 인접 세대는 사용으로 인한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저층부 세대는 4층 피트니스, GX 및 3층의 실내 및 외부 수영장, 사우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종 저층부 세대는 저층부 판매시설 지붕의 옥외공간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종 최하층 세대는 저층부 지붕 파라펫 (난간)과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음.</li> <li>•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아파트 및 오피스텔 저층부 판매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수경시설 (폰드, 바닥분수 등)이 설치되며 입주 이후 입주자의 부담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개구리 등의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조건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 (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 (휴게시설, 놀이시설, 수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경계 선형 등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세대 발코니 깊이가 형별마다 상이하며, 같은 세대에서도 주동형태로 인해 높이 및 깊이가 달라 협소할 수 있음으로 계약 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li> <li>• 발코니에서 외부로 진출입은 불가함(유지관리 제외)</li> <li>•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는 주동 입면 형상 및 고층건물 특성상 구조물에 의한 간섭 및 건물 유지보수에 의한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li> <li>• 동형태에 따른 세대 배치계획상 세대 거실 2면창을 통해 인접세대간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li> </ul>
<p>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북동측 (센트로드변) 공동주택 전용 차량 출입구가 위치하며, 남서측 차량출입구는 공동주택, 오피스텔,</li> </ul>

구분	내용
	<p>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주차장 천장고는 지하 1층 차로 부분이 3.0m 이하 이며, 지하2층 2.7m, 지하3, 4층 2.3m로 계획 예정임.</li> <li>지하주차장 사용은 배치계획,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 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급속3대, 완속9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li> <li>지하주차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별 주차장 영역을 구분하였으나,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주차장 이용자가 동선 계획 상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통로를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현장여건에 따라 지하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 폭이 좁아질 수 있음.</li> </ul>
설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및 위치에 따른 층별 구조벽체의 일부 상이로 인해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을 위한 사항이므로,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li> <li>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li> <li>세대 내 일부 창호는 비상시 소방관 진입창으로 관계법령 및 심의 조치에 따라 이용되며, 소방관 진입창 표시 스티커가 부착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소방관 진입창의 유리사양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주동 입면 외부장식물로 인해 층별, 각 세대별 시야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야 간섭은 층별, 각 세대별로 다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건본주택 방문 시 단지 모형, 유니트 안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li> <li>세대 외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주동 입면 외부 장식물이 설치되어 외부 조망 간섭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주동 입면 외부장식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리원이 세대를 통한 출입이 있을 수 있음.</li> <li>주동 입면 외부장식물은 동별, 층수에 따라 세대 내에서 보이게 되는 형태, 깊이, 높이, 재질 등이 다르며 해당 장식물로의 출입 또는 이용은 불가함.</li> <li>주동 입면 외부장식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장식물의 형태와 깊이, 색상이 달라질 수 있음.</li> <li>주동 입면 외부장식물 및 조명 설치로 인한 일부 세대는 눈부심, 조망 및 시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li> <li>연동시물레이션 검토 등으로 추가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발전기 등의 기계작동 및 점검 시 연기가 발생될 수 있음.(비상시, 점검 시, 시운전 시)</li> <li>20층 이하 주동 입면 외부장식물은 소방관 진입동선 확보를 위해 기준층 디자인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li> <li>저층부 시설내 천정속 설비공간 확보를 위해 층고가 관련법령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li> <li>미술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조경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상3층, 4층 옥상 조경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고, 단지내 조경 수목, 시설물 등은 디자인 의도 및 수급여건 등에 따라 위치와 형태, 재료가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어린이 놀이터, 유아 놀이터 및 주민 운동시설의 각종 기구와 시설물은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li> <li>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과 포장패턴 등 공용시설에 대하여 이설, 증설 및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단위세대	<p>전기 기계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음.</li> <li>인덕션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대용량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임.</li> <li>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li> <li>실외기실에 청정환기유니트가 시공될 시, 청정환기유니트는 노출시공되며, 이에 따라 실외기실 천정높이가 달라질 수 있음.</li> <li>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li> <li>상가 환기 시스템 및 공조시스템 등으로 인한 저층 일부 세대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일부 세대는 항공장애등, 경관조명 등의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고층 건축물 특성상 일부 설비,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지원 및 시운전을 위하여 조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주거 지하, 공용부분에 판매시설을 위한 서비스(전력,통신,설비 외)의 일부가 통과 할 수도 있음.</li> <li>본 프로젝트 단지는 바닷가에 인접하여 해무 발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세대 외부에 결로수 발생이나 전기 기구의 수명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필로티 상부의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li> <li>식탁용 매입 또는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실시설계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평형에 따라 단상(1Ø x 220V x 60Hz) 또는 3상(3Ø x 38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 요망.</li> <li>세대 내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음.</li> <li>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무인택배는 단지 내 동별로 적용 예정이며, 위치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단위세대는 거실에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li> <li>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옥외 보안등 등에 의해 일부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비상발전기 운전 시 운전애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한전 인입장비 및 한전패드,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창호는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li> <li>• 세대 내 우물천장 및 간접 등박스의 높이, 형태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설비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li> <li>• 주방 자동식 소화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동식 소화기 일부가 노출될 수 있음.</li> <li>•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li> <li>•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 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수전이 설치되는 비 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음.</li> <li>•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음.</li> <li>•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주방싱크 배수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주방 천장에 렌지후드용 웬 및 자동식소화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일부 노출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와 메인 주방에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는 도시가스 공급 측과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전열교환기의 급·배기는 세대별 외부와 직접 급·배기 방식이며 급·배기를 위하여 세대 루버에 별도의 급·배기구가 설치되고, 세대 내부에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배관이 설치되어 천정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li> <li>•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li> <li>•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환기를 위한 환기유니트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이 시공될 수 있음.</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위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에 설치를 기본으로 하나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마감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관계기관 심의결과에 따라 20층 이하 세대에는 거실 또는 침실 창호 1개소에 소방진입창이 설치되며, 야간식별을 위해 창가운데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으로 붉은색 표시가 설치되어 조망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li> <li>• 소방대 진입창 기준에 따라 창호의 형태 및 성능, 진입창 표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소방대 진입창 주변에는 물건적재를 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에 전시된 121B 식탁 팬던트는 본 공사 시 설치된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변경예정임.</li> <li>• 세대 외부 입면 장식물로 인해 실외기실 환기에 간섭이 생길 수 있음.</li> </ul>
<p>가구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 및 높이는 천장배관, 유상웬선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폭은 외벽의 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li> <li>•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li> <li>•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대비 도막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현관신발장,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람.</li> <li>•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간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상부에는 환기장치가 노출되어 설치됨.</li> <li>• 실외기실의 위치에 따라 인근 실과의 마감레벨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li> <li>• 기본형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 마감 없음. 이로 인해 일부 비확장 시 환기장치 및 각종 배관이 노출 시공됨.</li> <li>• 세대 발코니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li> <li>•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li> <li>-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li> <li>-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li> <li>-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가구 하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li> </ul> </li> <li>•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li> <li>•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및 훼손등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 하기로함.</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창호크기, 개폐방향 및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천장고는 기준층 거실 기준 2.4m이며, 실외기실, 다용도실,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li> <li>• 창호는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공 시 위치 및 형태, 색상,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실외기실 외부 그릴창호의 폭은 송도지역 강풍을 고려하여 폭이 축소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A, 84B 타입은, 건립세대인 98타입과 세대 마감이 동일하며, 평면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112, 121A, 155, 168, 179 타입은, 건립세대인 121B 타입과 세대마감이 동일하며, 평면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가구의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달로그와 도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확장세대는 유·무상 옵션 선택이 불가함.</li> <li>• 84A, 84B 타입의 주방 천장에는 우물천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세대 타입에 따라 우물천장의 크기 및 범위는 상이함.</li> <li>• 112, 121A, 121B타입의 아트월 및 복도, 현관의 간접조명 및 등박스(우물천장)는 루미나옵션 선택 시 설치됨.</li> <li>• 세대 내 설치된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 마감판넬 등은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패턴, 색상, 나누기 등이 다를 수 있음.</li> <li>• 전기오븐은 빌트인 김치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유상옵션 선택한 세대만 추가 선택이 가능함.</li> <li>• 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됨.</li> <li>• 98타입 이상 면적의 세대에 설치되는 스타일링 바스룸은 바닥에 별도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 복도의 바닥 마감재와 동일한 자재로 시공됨.</li> <li>• 84A, 84B 타입에는 스타일링 바스룸이 설치되지 않음.</li> <li>• 침실 내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방의 스위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안방 유상옵션 불박이장의 마감재는 세대 내 전시된 샘플마감재로 시공됨.</li> <li>• 액자를 걸 수 있는 픽처레일은 거실, 침실에 설치되며 천장의 몰딩의 크기 및 모양은 일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하여 주방가구 상부에 점검구가 설치됨.</li> <li>•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물탈수기(음식물 분쇄처리기 옵션 미선택시)가 설치되며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li> <li>• 음식물분쇄처리기 유상옵션 선택 시 싱크대 하부에 설치되며 음식물 분쇄처리기 설치로 인해 하부장의 구성 및 내부 공간이 달라질 수 있음.</li> <li>• 각 세대에 설치되는 수납 선반의 경우, 사용 패턴 및 과도한 하중으로 인하여 처짐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본공사 시 품질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li> <li>•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li> <li>• 가구 힌지, 레일, 손잡이 등 가구의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공사 시 실외기실 출입문의 위치, 열림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손잡이, 철물 등의 하드웨어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li> <li>•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타일, 판넬류 등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li> <li>•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함.</li> <li>• 욕실 출입문 및 다용도실 문은 PVC 계통 (ABS재질) 도어로 시공됨.</li> <li>•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드레스룸 및 현관창고에 설치되는 판넬 등은 주택형별 및 홈스타일초이스의 선택에 따라 사이즈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155타입의 안방의 파우더룸은 상부수납장이 설치되지 않음.</li> <li>• 155, 168, 179타입 보조주방에는 국내산 주방가구가 설치됨.</li> <li>• 112, 121A, 121B, 155, 168, 179 타입 전기오븐 하부장 내부 2단 인출식 서랍은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됨.</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121B 타입의 주방 아일랜드 길이는 냉장고 열림을 고려하여 본공사 시 조정예정임.</li> </ul>
스마트홈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멀티홀더의 무선통신은 Bluetooth 5.0 호환제품에 한하며, 4~10.1인치의 모바일 기기를 거치할 수 있음. 스마트패드의 최소 사양은 Octa-core 1.6GHz CPU, 10.1인치, 해상도 1920*1200 4GB RAM, 64GB Storage 임.</li> <li>• 스마트패드의 A/S정책은 제품 보증서에 기재된 A/S 정책에 준하며, 기산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키포출일로부터 품질보증 기간을 기산함.</li> <li>• 월패드, 주방멀티홀더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함.</li> <li>•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연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네티이션(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 발생함.)</li> <li>•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가능.</li> <li>•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li> <li>•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주차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li> <li>•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li> </ul>



구분	내용
	<p>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음.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가능한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음.</li> <li>• 4~5층 및 최상층 1개층 세대 내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배터리 교체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8포트의 허브장치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음성인식 스피커는 입주시점에 세대별 1개 무상 제공이나,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이 필요함.</li> <li>• 음성인식 스피커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제조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외관디자인 및 규격, 사양, 재료, 구성품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음성인식 스피커의 구성 및 기능, 연결,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설치장소, 품질보증, 고객센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사양 등은 제품박스 개봉 시 동봉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참조 바라며 음성인식 스피커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입주민이 직접 해당업체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해당업체의 A/S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li> <li>• 음성인식 스피커의 A/S정책은 제품 보증서에 기재된 A/S 정책에 준하며, 기산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킴출일로부터 품질보증 기간을 기산함.</li> <li>•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 계정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홈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함.</li> <li>• kakao i 연동 세대별 IoT 제어 서비스 (조명 제어 등) 및 일부 정보 기능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연동 비용은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10년간 무상이나,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li> <li>• 헤이 카카오, 카카오홈 앱, 카카오톡을 통해 더샵 홈네트워크와 제어기능(조명제어 등),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서비스의 다중 사용자(가족 구성원), 다중 기기(Kakaomini)연동은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기능에 대한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li> <li>• 카카오홈 앱, 헤이카카오 앱 음성제어 및 카카오톡 챗봇의 세대 기기제어와 정보확인 서비스 제공범위는 서로 상이할 수 있음.</li> <li>• 헤이 카카오를 통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카카오톡,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날짜, 시간, 주식, 환율, 운세 등의 카카오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편의서비스는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기능(멜론을 통한 음악듣기 등)은 이용요금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카카오에 있음.</li> <li>•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li> <li>•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의 종류(9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 (<a href="http://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a>)에서 확인 가능하며,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 (<a href="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a>)에서 확인 가능.</li> <li>• 삼성전자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함. 또한 세대별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음. 유상 전환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름.</li> <li>• 더샵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SKT 스마트홈, NUG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됨. 이 후 서비스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SKT 스마트홈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함. SKT 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중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방송TTS와 같은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사용환경은 SKT Smart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sktsmarthome.com">www.sktsmarthome.com</a>)에서 확인 가능함.</li> <li>•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LG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LG ThinQ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li> <li>•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LG전자 생활가전 제품(8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종류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LG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 ThinQ 앱 사용환경은 LG전자 홈페이지(<a href="http://www.lge.co.kr">www.lge.co.kr</a>) 에서 확인 가능함.</li> </ul>
<p>건본주택</p>	<p>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환기구, 소방감지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본주택 내 임시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인허가도서 및 소방법 등 기준에 의해 시공됨.</li> <li>• 건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에 설치 된 조명 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전자식 스위치류, 디지털 도어락, 현관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건본주택 건립 타입(98, 121B)와 건본주택 미건립 타입(84A, 84B, 112, 121A, 155, 168, 179)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li> </ul>

구분	내용
	<p>사양은 견본주택 견립 타입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상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분양가 미포함)</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장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의 모형은 형태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주동 및 저층부의 입면의 색상, 형태, 조명 연출은 실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외부 장식물의 형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시공 시 외부 루버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외관상 보이는 마감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li> </ul>

## IX 기타 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기직접 면한 창호는 KS F 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li> <li>•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li> </ul>
고효율 기자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고효율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li> </ul>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동스위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설치</li> <li>• 해당 세대현관에 각 1개소 설치</li> </ul>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li> </ul>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공용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li> </ul>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li> </ul>
절수설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li> </ul>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건축감리1	건축감리2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남양기술감리단	(주)이룸이앤씨	(주)이룸이앤씨
감리금액	6,488,152,000		1,237,731,817	449,310,000	88,530,000
사업자등록번호	211 - 81 - 60214	215 - 81 - 08826	403 - 14 - 36645	690 - 86 - 00151	690 - 86 - 00151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정산 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92021-101-0014100호	464,563,96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약관 (보증사고, 보증채무의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호우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확인**

- ※ 본 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 송도국제도시개발(유), 토지를 수탁 받은 매도인 겸 수탁자(신탁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주)포스코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본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①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예금계좌로 입금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 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와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 ③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④ 매수인(수분양자)은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주)포스코건설 또는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포함)교체 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하자보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주)포스코건설 또는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있다.
- ⑥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⑦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 및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 겸 수익자(송도국제도시개발(유))는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나. 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지정기간)통지

▣ 사업주체 /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수탁사	위탁사	
상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주)포스코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24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상가 에이동 3층 (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법인 등록번호	110111-1348237	110114-0037603	174611-0002979

▣ 분양안내 홈페이지 : ([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http://www.더샵송도아크베이.com))

▣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 (송도동 37-2)

▣ 분양문의 : ☎ 1855-1331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